

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밸류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①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사항 보완
일괄신고서	①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변경 (4등급→5등급)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사항 보완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19년 1월 23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규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50조(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)	<p>⑨ 제5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	<p>⑨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
부칙	<신설>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, 적용한다.

◆ 일괄신고서 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	<p>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p> <p>제2부 4. 운용전문인력 <생략></p> <p>제2부 5. 투자실적 추이 <생략></p> <p>제2부 6. 주요투자위험 (2) 투자위험 등급 분류 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, 6등급 중 4등급(보통위험)으로 분류 하였습니다.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'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'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	<p>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p> <p>제2부 4.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</p> <p>5.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</p> <p>제2부 6. 주요투자위험 (2)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은 채권이며 위험등급, 6등급 중 5등급 (낮은위험)에 해당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(연환산 표준편차 : 3.96%)</p>
본문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<생략></p> 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, 6등급 중 4등급(보통위험)으로 분류 하였습니다.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'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'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생략></p> <p>제3부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 <p>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(2)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</p> 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5등급(낮은위험)으로 분류 하였습니다. (연환산 표준편차 : 3.96%)</p> 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p> <p>제3부 업데이트</p> <p>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(2)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</p>

<p>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<이하 생략></p>	<p>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<u>투자자가 해당 집합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</u>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<이하 생략></p>
---	--